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 검토보고서</p> <p style="text-align: center;">검 토 의 견</p> <p>[총괄부문]</p> <p>○ 본 조례안은 1991년 제정되고, 1997년 8월 전문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의 자연환경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으로 전문개정시 조례화가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되었음.</p> <p>○ 지역적 특성과 환경여건에 맞도록 지방자치 단체 차원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점과 지역 주민의 요구에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자체가 환경정책과 집행의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자연환경보전법이 제정된 이후 8년이 지난 시점에도 중앙정부(환경부)에서 법 제34조의 생태·자연도조차 제작되지 못한 점과 구체적인 활동결과가 별로 없다는 데에는 이 법의 선언적 의미에 치중한 외국법 모방 추세의 실례로 생각함.</p> <p>○ 또한 97년 8월 전문개정 이후 조례로 위임된 규정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1년간의 준비작업 끝에 이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긍정적이라고 판단함.</p> <p>[세부사항]</p> <p>가. 자연환경보전법 제13조(시·도 관리 야생동·식물 지정·보호)</p> <p>제30조(시·도 생태계 보전지역의 지정·보전)</p> <p>제33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p> <p>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p> <p>제35조(자연환경조사원)</p> <p>제43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p> <p>제44조(자연경관의 보전)</p> <p>같은법시행령 제43조(이용료의 정수) 등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도록 하는 위임 조항들로 향후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p> <p>나.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세밀하게 규정되어 조례로 규정할 부분이 매우 적다는 점과 조례안 제20조의 생태도시의 조성, 안 제21조의 녹지의 총량관리, 안 제22조의 공</p>	<p>공시설의 녹화, 안 제23조의 자연형 하천 정비 그리고 안 제26조의 산·하천의 시민 보호·관리체 실시 등이 법에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서울시 차원의 새로운 시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실효성 있는 규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p> <p>다. 서울시가 새롭게 시도하려는 생태도시 조성과 공공시설의 녹화 및 자연형 하천 정비 조항은 '노력하여야 한다'로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화시키려는 논의가 필요하며, 생태도시는 전원도시(garden city), 자족도시(self-sufficient city), 녹색도시(green city), 또는 독일형의 외코폴리스(ocopolis), 일본식의 에코시티(eco-city)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서울환경보고서」라는 시정개발연구원의 1994년도 보고서에도 지적하였듯이 서울의 다핵화와 서울의 중심축은 한강관리와 그 외곽 산림지대 관리가 그 주요 초점이 되고 있으나 한강을 중심으로 한 자연하천관리에 대한 충분한 실효성 있는 규정이 아닌 '노력한다'라는 선언적 의미로 일관되고 있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서울시의 규모와 인구로 보아 중·소형 규모의 생태도시 조성이 불가능하므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녹지지역(greenbelt)과 위성도시 개발에 따른 수도권 환경의 악화 등 외부적 여건을 고려한 자기방어적인 생태도시 건설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p> <p>라. 서울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이 우선되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생태·자연도 작성이 2만5천분의 1 지도로 되어 법보다 더욱 개선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이를 추진할 예산확보도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자연형 하천정비 조항에 따른 타 관계부서와의 협조, 이에 따른 하천복원을 어떻게 추진할지 여부가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못해 어렵게 생각함. 또한 최근 입면녹화(건축물의 변경, 각종 울타리, 방음벽, 콘크리트 용벽이나 교각과 같은 수직면과 사면 등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입면에 대해 냉각식물을 도입하여 녹음으로 곁을 입히는 것을 말함)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p>
---	---

조례안 제22조(공공시설의 녹화)에 입면녹화의 적극 노력도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마. 서울지역의 대기오염과 산성비 그리고 서식지 환경파괴로 인하여 수종수와 개체수의 감소가 매년 나타나고, 토양오염의 산성화 정도는 산림파괴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산림을 서식지로 하는 곤충류의 감소로 1980년대 이후 서울지역 서식곤충류가 1970년대에 비해 80% 정도 멸종되어 서울은 곤충이 살 수 없고 해충류인 모기, 파리, 진드기 등이 개철적인 구분없이 서식하는 비정상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관계전문가의 연구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안산, 북한산 등 주변의 고층아파트 건축 등으로 서울의 부도심지역의 경관, 생태계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 되어야 하겠음.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중 “적합하고”를 “적합하게 보전하고”로, “가능하도록 보전·관리”를 “되도록 관리”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연경관,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및 그 종등은 보호되어야 한다.

안 제11조제1항중 “자연공원법에 의하여”를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에 의하여”로, “자연공원법 또는”을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자연공원법에 의하여”를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에 의하여”로, “자연공원법 또는”을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또는”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자연환경을 종합적·체

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시민이 폐적하고 살아숨쉬는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도시의 개발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자연경관,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및 그 종 등을 보호되어야 한다.
4. 자연환경은 각종 오염이나 해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5. 모든 시민이 자연환경의 보전에 참여하고 자연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제 3 조(시장·구청장 및 시민 등의 책무)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교통, 주택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생태적 전성을 고려하여 그 해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의 자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민(법인·단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서 자연환경의 해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 또는 자치구의 자연환경보전시책의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4 조(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추진) ①시장은 자연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1항의 보전계획은 시민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환경영화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 5년마다 수립되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현황 및 이용실태